삼성화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0.02.28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확인서]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본 연차보고서가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영 무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나. 지배구조 현황 · 3

1) 조직도 · 3

2) 지배구조의 특징 · 3

3) 지배구조 현황(요약) · 5

다. 관련 규정 · 5

2. 이사회 · 6

가. 역할 · 6

1) 총괄 · 6

2) 구체적 역할 · 6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 · · · · · · · · · · · · · · · 7

나) 정관 변경 · 7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 8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 · · · · · 9

마)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 · · · · · · · · · · · · · · · · · 9

바)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 · · · · · · · · · · · · · · · · · · 10

사)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 · · · · · · 11

아)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 · 11

나. 구성 · 12
1) 총괄 · 12
2) 구성원 · 13
3) 요약 · 17
다. 활동내역 · 20
1) 활동내역 개요 · 20
2) 회의 개최내역 · 21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 · · · · · · · · · · · · · · · · 27
1) 이사회 평가 · 27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27
마. 사외이사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 · · · · · · · · · · · · 2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8
가. 역할 · 28
나. 구성 · 29
다. 선임기준 · 30
1) 후보 자격요건 · 30
2) 후보 추천 절차 · 30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 30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31
1) 활동내역 개요 · 31
2) 회의 개최내역 · 32
3) 평가 · 34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35
1) 대표이사 후보 · 35

가) 후보자 인적사항 · 35
나) 후보제안자 · 35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35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36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 · · · · · · · · · · · 36
2) 대표집행임원 후보 · 36
3) 감사위원 후보 · 36
가) 후보자 인적사항 · 37
나) 후보제안자 · 39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40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41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43
4) 사외이사 후보 · 45
가) 후보자 인적사항 · 46
나) 후보제안자 · 48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50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51
마)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 · · · · · · · · · · · · · · · 51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 · · · · · · · · · · · 56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 · · · · · · · · · · · · · 58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59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 · · · · · · · · · · · · · · · · 59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62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 · · · · · · · · · · · · · · · 64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 · · · · · · · · · · · · · · · · · · 64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65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65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 · · · · · · 65
가) 이사회 · 65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71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 73
라) 내부거래위원회 · 76
마) 보수위원회 · 78
바) 감사위원회 · 80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 · · · · 83
가) 박대동 사외이사 · 83
나) 조동근 사외이사 · 83
다) 박세민 사외이사 · 83
라) 김성진 사외이사 · 84
마) 요약 · 84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 · · · · · · · · · · · · · · · · 85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85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 · · · · · · · · · · · · · · · · 87
1) 소극적 자격요건 · 87
2) 적극적 자격요건 · 87
3) 요약 · 91
가) 박대동 사외이사 · 91

나) 조동근 사외이사 · 91
다) 박세민 사외이사 · 92
라) 김성진 사외이사 · 92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92
바. 사외이사 평가 · 93
1) 평가 개요 · 93
2) 내부평가 · 93
가) 내부평가 개요 · 93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94
3) 외부평가 · 95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95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96
1) 박대동 사외이사 · 96
2) 조동근 사외이사 · 97
3) 박세민 사외이사 · 98
4) 김성진 사외이사 · 99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 · · 100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 · · · · · · · · · · · · · · · 100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101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 · · · · · · · · · · · · · · · · 101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 · · · · · · · · · · 101
1) 일반 · 101
2) 비상계획 · 102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 · · · · · · · · · · · 103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 · · · · · · · · · · · · · · · 103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 · · · · · · · · · 103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 · · · · · · · · · · · · · 103
1) 소극적 요건 · 103
2) 금융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104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 · · · · · · · · · · · · · · · · 104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 · · · · · · · · · · · · · · · · 104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 104
3) 후보군 현황 · 105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점검내역 · · · · · · · · · 10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 · · · · · · 106

6. 감사위원회 · 107
가. 역할 · 107
1) 총괄 · 107
2) 구체적 역할 · 107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 · · · · · · · · · · · 107
나) 외부감사인 선정 · 108
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위임 관련 사항 · · · · · · · · · · · · · 109
라) 재무제표 검토 등 · 109
나. 구성 · 110
1) 총괄 · 110
2) 구성원 · 11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11
1) 활동내역 개요 · 111

2) 회의 개최내역 · 111
3) 평가 · 114
라. 감사보조조직 등 · 115

7. 리스크관리위원회 · 116
가. 역할 · 116
1) 총괄 · 116
2) 구체적 역할 · 116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 · · · · · · · · · · · 116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 · · · · · · · · · · · · · · · 117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 · · · · · · · · · · 117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 · · · · · · · · · · · · · · 118
마) 기타 · 118
나. 구성 · 119
1) 총괄 · 119
2) 구성원 · 11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20
1) 활동내역 개요 · 120
2) 회의 개최내역 · 120
3) 평가 · 123

8. 내부거래위원회 · 124
가. 역할 · 124
1) 총괄 · 124
2) 구체적 역할 · 124

가) 내부거래 보고 청취 · 124
나) 내부거래 심의·의결 · 124
다) 내부거래 조사 명령 · 125
라) 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 · · · · · · · · · · · 125
나. 구성 · 125
1) 총괄 · 125
2) 구성원 · 12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26
1) 활동내역 개요 · 126
2) 회의 개최내역 · 126
3) 평가 · 129

9. 보수위원회 · 129

10. 경영위원회 · 130
가. 역할 · 130
1) 총괄 · 130
2) 구체적 역할 · 130
나. 구성 · 130
다. 활동내역 · 130
1) 활동내역 개요 · 130
2) 회의 개최내역 · 131
3) 평가 · 132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 · · · · · · · · · · · · · · · · 132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133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 137
가. 총괄 · 137
나. 구성 · 137
1) 총괄 · 137
2) 구성원 · 139
다. 권한과 책임 · 139
1) 총괄 · 139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 · · · · 139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40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40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 · · 140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141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 · · · 141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142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 142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42
1) 의사결정 절차 · 142
2) 활동내역 개요 · 143

3) 회의 개최내역 · 144
4) 평가 · 145

2. 보수체계 · 147
가. 주요사항 · 147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 · · · · · · · · · · · 147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 · · · · · · · 148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 · · · 149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150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 150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 · · · · · · · · · · · · · · · 150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 · · · · · · · · · · · · · · · · · 150
나. 보수 세부사항 · 151
1) 임직원 총보수 · 151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 · · · · · · · · · · · · · · · 151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 · · · · · · · · 152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 · · · · · · · · · · · · 152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 · · · · · · · · · · 152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 · · · · 153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 · · · · 153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154
6) 이연보수의 조정 · 154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 155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신규선임, 연임 및 해임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9년말 현재,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4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였으며,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회사는 정관과 이사회규정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 및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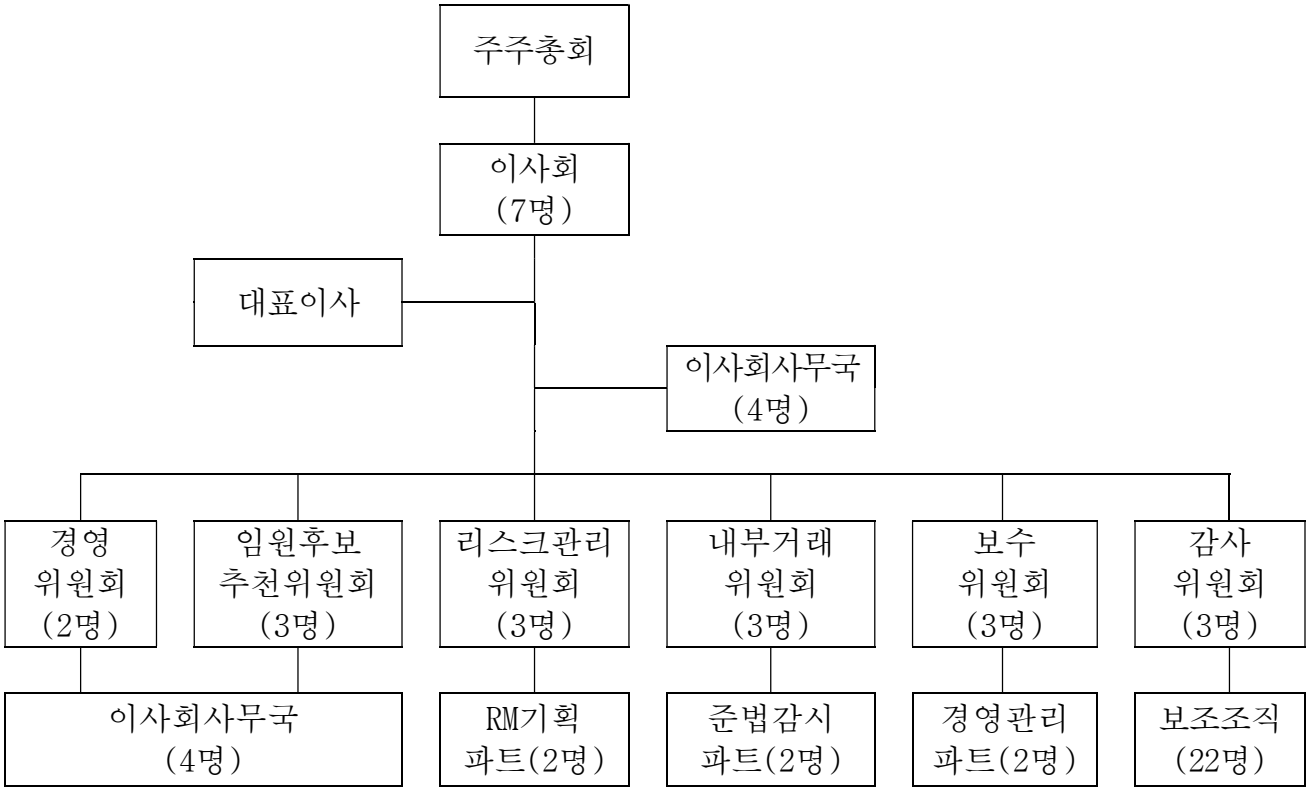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kind.krx.co.kr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http://www.knia.or.kr
- 당사 홈페이지 : http://www.samsungfire.com

삼성화재는 관련법규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 이사회사무국 및 위원회 간사부서는 실제 지원업무 담당인원을 기재('19년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삼성화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임면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경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일반, 재산운용,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검증을 하며, 필요시 후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리스크관리규정 제(개)정,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대책수립,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관리,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는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부거래 보고, 청취, 심의/의결, 조사 및 명령,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 및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운영, 지급결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및 개선방안 제시,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이름/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4/7	박대동(사외)	- 정관 제23~29,30,31조 - 이사회규정
경영위원회	회사 주요사항 의결	0/2	최영무(상임)	- 정관 제29조의2 - 경영위원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 후보 추천	2/3	박대동(사외)	- 정관 제29조의2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전사 리스크관리	2/3	김성진(사외)	- 정관 제29조의2 -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내부거래 위원회	계열사 내부거래 심의	3/3	조동근(사외)	- 정관 제29조의2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성과보상제도 운영	2/3	김성진(사외)	- 정관 제29조의2 - 보수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등	3/3	조동근(사외)	- 정관 제29조의2 - 감사위원회규정

※ '19년말 기준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

1) 총괄

삼성화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삼성화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이사회규정 제13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이에 따라 '20년 경영목표·전략은 '19년 9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19년 10월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이 사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19년 1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20年 경영계획 주요 전략]

□ 보험영업 : 주력시장 중심 매출확대, 신규 수익원 지속 발굴

□ 손익관리 : 안정적 재원 확보와 손해관리 강화로 손해율 개선

□ 자산운용 : 高이원 자산 확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低금리 대응

승인 받은 '20년 경영목표·전략은 분기별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되고 평가 받을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삼성화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이에 따라 '19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년 3월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회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발행할 주권의 종류를 삭제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도록 변경(제6조)
-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에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문구를 간소화(제7조)
-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신고에 관한 조항을 삭제(제8조)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절차 명확화(제33조)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고, 이를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변경 (제34조 및 제36조의2)

○ 변경목적

- '19년 9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에서 정한 사항을 先반영
-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달시 선임절차를 정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회사 운영의 법적 안정성 유지
- 외부감사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간소화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삼성화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제13조)

이사회는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이에 따라 '20년 예산계획을 편성하였으며, '20년 경영목표 및 전략과 함께 '19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19년 결산안에 대해 '20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년 2월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별도기준 6,092억원, 연결기준 6,456억원)
- 총자산 (별도기준 84조 4,369억원, 연결기준 85조 1,722억원)
- 배당 (보통주 액면배당률 1,700%, 3,385억원,
우선주 액면배당률 1,701%, 228억원)

※ 총 배당금은 전년도 比 1,27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삼성화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19년 한 해 동안 회사의 합병·분할·해산·영업양수도와 같은 조직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마)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규정 제14조(위임), 제14조의2(소위원회 설치등)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리스크 허용한도 및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결정,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관련 신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 및 자금조달 계획,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9년 3월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과 내부 리스크모델 개선 로드맵 수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8년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18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19년 6월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9.3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을 보고하였습니다.

'19년 9월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년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점검 및 '20년 거래전략, 대손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9.6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19.6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19년 10월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년 ALM 운용 점검 및 '20년 전략, '20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20년 일반보험 보유 및 재보험 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19년 11월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20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바)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삼성화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체계, 행동규범,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및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규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체계·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산하 전담조직의 운영 및 조직별 준법감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부분을 개선하며, 그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연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부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삼성화재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의거하여 '19년 1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평가·검증 등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삼성화재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 대한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해 대주주·임원 등과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임원 등과의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이사회 결의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삼성화재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정관 제23조) 단, 사외이사는 상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고도화된 보험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9년말 현재 삼성화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년 3월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명이 3년의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포함) 및 사외이사 모두 최초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연임시 임기는 3년내로 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관 제25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이사회 의장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대동 사외이사가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18년 3월에 최초 선임되어 현재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가) 박대동 이사회 의장

- 직위 : 사외이사
- 임기 : '17.03.24 ~ '20.03.23
- 경력 :
  ·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셀맥인터내셔날 사외이사
  · 2016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2012 제19대 국회의원(새)
  · 2008 예금보험공사 사장
  · 2007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
  · 1978 행정고시 합격(제22회)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7.03.24 ~ 현재

나) 조동근 사외이사

- 직위 : 사외이사
- 임기 : '19.03.22 ~ '22.03.21
- 경력 :
  · 2017 (現)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 2016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1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 2005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2005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1986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6.03.11 ~ 현재

다) 박세민 사외이사

- 직위 : 사외이사
- 임기 : '17.03.24 ~ '20.03.23
- 경력 :
  ·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
  · 2014 (現)한국해법학회 부회장
  · 2011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손해보험 소위원장)
  · 2010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 2007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보수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7.03.24 ~ 현재

라) 김성진 사외이사

- 직위 : 사외이사
- 임기 : '18.03.23 ~ '21.03.22
- 경력 :
  · 2018 (現)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2018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한양증권 사외이사
  · 2012 (現)숭실대 겸임교수
  · 2008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겸 초빙위원
  · 2007 조달청장
  · 2005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 1976 행정고시 합격(제19회)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보수위원회 위원장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8.03.23 ~ 현재

마) 최영무 대표이사

- 직위 : 대표이사(상임, 사장)
- 임기 : '18.03.23 ~ '21.03.22
- 경력 :
  · 2018 (現)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 2013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부사장)
  · 2011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전무)
  · 2005 삼성화재 인사팀장(상무)
  · 1987 안국화재 입사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8.03.23 ~ 현재

바) 이범 사내이사

- 직위 : 사내이사(상임, 기획실장)
- 임기 : '18.03.23 ~ '21.03.22('20.01.21 사임)
- 경력 :
  · 2018 (現)삼성화재 기획실장(부사장)
  · 2018 (現)삼성화재 사내이사
  · 2015 삼성화재 일반보험본부장(부사장)
  · 2015 삼성화재 기업영업총괄(전무)
  · 2014 삼성화재 기업영업2사업부장(전무)
  · 2012 삼성화재 기업영업3사업부장(전무)
  · 1988 안국화재 입사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8.03.23 ~ 현재

사) 배태영 사내이사

- 직위 : 사내이사(상임, 경영지원실장)
- 임기 : '18.03.23 ~ '21.03.22
- 경력 :
  · 2018 (現)삼성화재 사내이사
  · 2018 (現)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전무)
  · 2014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상무)
  · 2011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담당임원(상무)
  · 2005 삼성생명 전사RM팀 RM기획파트장
  · 1986 동방생명 입사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경영위원회 위원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삼성화재 이사 재임기간 : '18.03.23 ~ 현재

3) **요약**('19년말 기준)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박대동	사외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6 (現)셀맥인터내셔날 사외이사 2016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2012 제19대 국회의원(새) 2008 예금보험공사 사장	'17.03.24	'20.03.23	33개월	임추委 리스크관리委 내부거래委 감사委
조동근	사외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7 (現)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2016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1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05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986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16.03.11	'22.03.21	45개월	내부거래委 감사委 임추委
박세민	사외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6 (現)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 2014 (現)한국해법학회 부회장 2011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손해보험 소위원장) 2010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17.03.24	'20.03.23	33개월	보수委 감사委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김성진	사외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8 (現)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2018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6 (現)한양증권 사외이사 2008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겸 초빙위원 2007 조달청장	'18.03.23	'21.03.22	21개월	리스크관리委 보수委 내부거래委
최영무	상임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 (現)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2013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부사장) 2011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전무) 2005 삼성화재 인사팀장 1987 안국화재 입사	'18.03.23	'21.03.22	21개월	경영委 임추委
이범	상임	사내이사	2018 (現)삼성화재 기획실장(부사장) 2018 (現)삼성화재 사내이사 2015 삼성화재 일반보험본부장(부사장) 2015 삼성화재 기업영업총괄(전무) 2014 삼성화재 기업영업2사업부장(전무) 1988 안국화재 입사	'18.03.23	'21.03.22 ('20.01.21 사임)	21개월	-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배태영	상임	사내이사 경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2018 (現)삼성화재 사내이사 2018 (現)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전무) 2014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상무) 2011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담당임원(상무) 1986 동방생명 입사	'18.03.23	'21.03.22	21개월	경영委 리스크관리委 보수委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구성원이 평균 94.6%의 참석률을 보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들에게 의안을 사전 공유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건에 대해 상세한 사전설명을 진행하여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한 결과 '19년 한 해 동안 38건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이사회 : '19.01.31(木) /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19.01.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감사업무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의결안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제2차 이사회 : '19.02.27(水) /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02.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이사회 및 이사회內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의결안건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부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 제3차 이사회 : '19.03.22(金) / 오전 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19.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18년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의결안건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임차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Axiu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브라질법인 청산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8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ORSA)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 보수 책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內 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조동근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

라) 2019년 제4차 이사회 : '19.04.30(火)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19.04.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英 로이즈 손보사 지분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9년 제5차 이사회 : '19.06.20(木) /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19.06.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5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김성진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

바) 2019년 제6차 이사회 : '19.09.26(木) / 오전 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19.09.1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8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
4.의결안건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임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Manager 201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 배태영 사내이사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

사) 2019년 제7차 이사회 : '19.11.29(金) / 오전 9시

[안건 통지일 : '19.11.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기부금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19년 제8차 이사회 : '19.12.26(木) /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19.12.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최영무	이범	배태영	
2.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11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의결안건								
주요주주 등과의 부동산 임대차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년 경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검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삼성화재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이며, 평가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향후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출석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등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삼성화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규정 제3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후보,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및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이사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로 추천 받은 인사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규 및 내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와 관련하여 '19년 1월과 '19년 9월, '20년 1월 이사회에 총 3회 사외이사 후보군을 보고하였고, '19년 2월에는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20년 2월에는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와 관련하여 '19년 12월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검토한 후 동일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후보와 관련하여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20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에 의거,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내이사로는 대표이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은 66.7%로, 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現직위	선임일 및 임기 만료일	약력
박대동	사외	위원장	'19.03.22 ~'20.03.21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6 (現)셀맥인터내셔날 사외이사 2016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2012 제19대 국회의원(새) 2008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동근	사외	위원	'19.03.22 ~'20.03.21	2017 (現)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2016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2011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05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986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최영무	상임	위원	'19.03.22 ~'20.03.21	2018 (現)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2013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2011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2005 삼성화재 인사팀장 1987 안국화재 입사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 이사의 자격요건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 따릅니다.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 따릅니다.
- 임원의 자격요건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에 따릅니다.
-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따릅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임원 후보군을 확정하고, 임원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임원 후보군과 임기만료에 따른 재선임이 필요한 임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 중 최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임원 후보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사내이사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하며,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대표이사가 평가하고 성과측정 지표로는 경영성과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합니다.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시 정성적 평가를 활용합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회사평가, 이사회사무국 평가로 나누어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경영성과와는 독립적인 지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 임면, 연임 등에 활용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9년부터 '20년 2월까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8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인 8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년 1월과 9월, '20년 1월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19년 12월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년 2월말 기준 현직 사외이사 外 총 11명의 사외이사 후보군과 현직 대표이사 外 총 16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19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근 사외이사를 임기 3년의 사외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20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를 임기 3년의 사외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19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근 사외이사를 임기 3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20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성진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를 각각 임기 1년, 임기 3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1.31(木) / 오전 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19.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2.27(水)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19.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함

다)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9.26(木) / 오전 11시 5분
[안건 통지일 : '19.09.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2.26(木) / 오후 4시 40분
[안건 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0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01.30(木) / 오전 9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0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02.27(木)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최영무	
2.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함

3) 평가

삼성화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이며, 평가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18년 3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최영무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는 없습니다.

가) 후보자 인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해당사항 없음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대표집행임원 후보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위원 후보

'17년 3월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년의 임기로 선임된 조동근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년 2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조동근 감사위원이 지난 3년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언급하며 조동근 감사위원의 3년 연임을 제안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감사위원 후보 본인인 조동근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17년 3월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의 임기로 선임된 박대동 감사위원과 박세민 감사위원의 임기가 '20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년 2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구영민 인사팀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김성진 사외이사가 지난 2년간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언급하며, 김성진 사외이사를 임기 1년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17년 3월 당사의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후 3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한 박세민 감사위원의 3년 연임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19.02.27 감사위원 후보 추천 (연임 1인)
- '20.02.27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신규 1인, 연임 1인)

가) 후보자 인적사항

[조동근]

① 출생연도 : 1953년

② 출신학교
- 1985 美 신시내티대 경제학 박사
- 1979 서울대 경제학 석사
- 1975 서울대 경제학 학사
- 1971 서울대사범대부속고 졸업

③ 경력
- 2017 (現)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 2016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1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 2005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2005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1986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김성진]

① 출생연도 : 1951년

② 출신학교
- 2002 경희대 경제학 박사
- 1986 美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1977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 석사
- 1974 서울대 경영학 학사
- 1969 전주고 졸업

③ 경력
- 2018 (現)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2018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한양증권 사외이사
- 2012 (現)숭실대 겸임교수
- 2008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겸 초빙위원
- 2007 조달청장
- 2005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 1976 행정고시 합격(제19회)

[박세민]

① 출생연도 : 1963년

② 출신학교
- 1996 英 브리스톨대 보험법 박사
- 1991 英 런던대 법학 석사
- 1986 고려대 법학 학사
- 1982 청주고 졸업

③ 경력

-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
- 2014 (現)한국해법학회 부회장
- 2011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손해보험 소위원장)
- 2010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 2007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규형]

- 2020 (現)삼성화재 기업영업1사업부장(전무)
- 2018 삼성화재 사회공헌단장
- 2015 삼성화재 인사팀장(상무)
- 2013 삼성화재 홍보팀장(상무)
- 2011 삼성화재 방카슈랑스사업부장(상무)
- 1987 삼성SDS 입사

[구영민]

- 2020 (現)삼성화재 사회공헌단장
- 2020 (現)삼성화재 인사팀장(상무)
- 2014 삼성화재 인사파트장
- 1996 삼성화재 입사

(2) 후보자와의 관계

[김규형]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15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삼성화재 인사팀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후보자 조동근 감사위원은 '16년부터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는 이사회의 배석임원으로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후보자와 교류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과 후보자인 조동근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거래관계 등이 없습니다.

[구영민]

후보제안자인 구영민 인사팀장은 '14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삼성화재 인사파트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년 1월 삼성화재 인사팀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후보자 김성진 사외이사는 '18년부터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후보자 박세민 감사위원은 '17년부터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는 인사파트장으로서 후보자들과 교류하였으며, 현재는 이사회의 배석임원으로서 후보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인 구영민 인사팀장과 후보자들간에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거래관계 등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조동근 감사위원의 전문성이 경영진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구영민 인사팀장은 김성진 사외이사가 재정경제부에 다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조달청장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로서 금융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탁월하여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세민 감사위원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하였음은 물론, 향후에도 삼성화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3년 연임을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19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규형 前 인사팀장이 '19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근 감사위원을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구영민 인사팀장이 김성진 사외이사와 '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세민 감사위원을 각각 임기 1년, 임기 3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19조
-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 평가
  후보자들은 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이사의 자격요건) 제2항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동근]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금융업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여부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없음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여부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성진]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금융업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여부	○	재정경제부 주요 보직 역임,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없음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여부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박세민]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금융업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여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없음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여부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8조(감사위원회)
- 평가
  후보자들은 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법령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소명

- 삼성화재는 후보자들에게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동근]

조동근 감사위원의 임기가 '19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조동근 감사위원의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9년 2월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은 물론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동근 후보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당사 내부규정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개선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17년부터 당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에 꾸준히 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건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후보자를 이사회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감사위원 후보 본인인 조동근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김성진]

김성진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은 물론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진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주요 보직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바 있어 금융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세민]

박세민 감사위원의 임기가 '20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년 2월 박세민 감사위원의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 및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원후보천위원회에서는 박세민 감사위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17년 3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온 점과 향후에도 회사의 견실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이사회에 임기 3년 연임의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16년 3월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의 임기로 선임된 조동근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9년 2월 개최되었습니다.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16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후 3년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100%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한 조동근 사외이사의 3년 연임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17년 3월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의 임기로 선임된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0년 2월 개최되었습니다.

구영민 인사팀장은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가 지난 3년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의견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삼성화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3년 연임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19.01.3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최종 14인)
- '19.02.27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연임 1인)
- '19.09.2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최종 11인)
- '20.01.30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최종 11인)
- '20.02.27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연임 2인)

가) 후보자 인적사항

[조동근]

① 출생연도 : 1953년

② 출신학교
- 1985 美 신시내티대 경제학 박사
- 1979 서울대 경제학 석사
- 1975 서울대 경제학 학사
- 1971 서울대사범대부속고 졸업

③ 경력
- 2017 (現)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위원
- 2016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1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 2005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2005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1986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④ 사외이사 경력

1) 삼성화재
- 근무기간 : '16년 3월 11일 ~ 현재
- 이사회 참석 횟수 : 8회 中 7회('19년 평가기간)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 14회 中 14회('19년 평가기간)

[박대동]

① 출생연도 : 1951년

② 출신학교
- 1994 美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행정학 석사
- 1976 부산대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 1973 서울대 경제학 학사
- 1969 경남고 졸업

③ 경력
-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셀맥인터내셔날 사외이사
- 2016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2012 제19대 국회의원(새)
- 2007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
- 1978 행정고시 합격(제22회)

④ 사외이사 경력

1) CJ제일제당
- 근무기간 : '10년 3월 ~ '12년 5월

2) 코스모투자자문회사
- 근무기간 : '10년 6월 ~ '12년 5월

3) 삼성화재
- 근무기간 : '17년 3월 24일 ~ 현재
- 이사회 참석 횟수 : 8회 中 8회('19년 평가기간)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 19회 中 17회('19년 평가기간)

[박세민]

① 출생연도 : 1963년

② 출신학교
- 1996 英 브리스톨대 보험법 박사
- 1991 英 런던대 법학 석사
- 1986 고려대 법학 학사
- 1982 청주고 졸업

③ 경력
- 2017 (現)삼성화재 사외이사
- 2016 (現)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
- 2014 (現)한국해법학회 부회장
- 2011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손해보험 소위원장)
- 2010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 2007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④ 사외이사 경력

1) 알리안츠생명
- 근무기간 : '16년 4월 ~ '17년 2월

2) 삼성화재
- 근무기간 : '17년 3월 24일 ~ 현재
- 이사회 참석 횟수 : 8회 中 8회('19년 평가기간)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 10회 中 10회('19년 평가기간)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규형]

- 2020 (現)삼성화재 기업영업1사업부장(전무)
- 2018 삼성화재 사회공헌단장
- 2015 삼성화재 인사팀장(상무)
- 2013 삼성화재 홍보팀장(상무)
- 2011 삼성화재 방카슈랑스사업부장(상무)
- 1987 삼성SDS 입사

[구영민]

- 2020 (現)삼성화재 사회공헌단장
- 2020 (現)삼성화재 인사팀장(상무)
- 2014 삼성화재 인사파트장
- 1996 삼성화재 입사

(2) 후보자와의 관계

[김규형]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15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삼성화재 인사팀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후보자 조동근 사외이사는 '16년부터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는 이사회의 간사이자 배석임원으로서 조동근 사외이사와 이사회 등을 통해 교류해왔습니다.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과 후보자인 조동근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거래관계 등이 없습니다.

[구영민]

후보제안자인 구영민 인사팀장은 '14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삼성화재 인사파트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년 1월 삼성화재 인사팀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후보자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는 '17년부터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는 인사파트장으로서 후보자들과 교류하였으며, 현재는 이사회의 간사이자 배석임원으로서 후보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인 구영민 인사팀장과 후보자들간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거래관계 등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제안자인 김규형 前 인사팀장은 '19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근 사외이사가 3년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100% 출석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풍부한 학식과 연륜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3년 연임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구영민 인사팀장은 '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가 지난 3년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의견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삼성화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3년 연임을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은 삼성화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19년 2월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규형 前 인사팀장이 '19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근 사외이사의 임기 3년 연임을 제안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구영민 인사팀장이 '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의 임기 3년 연임을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근거로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조동근]

-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박세민]

-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평가

후보자들은 삼성화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삼성화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삼성화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것을 명시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경제신문 칼럼 기고, 학술대회 및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美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이며, 제19대 국회의원 재임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보험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英 브리스톨대학교에서 보험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보험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보험법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후보자의 공정성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고 있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가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보험법 박사로서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후보자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경제 분야에서 존경 받는 인사로 이사회 등의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왔으며,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국회의원 재임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보험 전문가로서 이사회 등의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가 원활히 운영되게 해왔으며,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보험법 전문가로서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삼성화재의 지속가능한 성장, 준법경영 및 소비자보호 실천에 기여해왔으며,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후보자의 충실성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16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90% 이상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였고,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연임시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동]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90% 이상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고,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연임시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민]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100%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으며,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연임시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삼성화재는 후보자들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서 등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0년 3월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 예정인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두 후보자가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동근]

조동근 사외이사의 임기가 '19년 3월 만료됨에 따라 '19년 2월 조동근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 및 회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원후보천위원회에서는 조동근 사외이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16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온 점과 향후에도 회사의 견실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이사회에 임기 3년 연임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사외이사 후보 본인인 조동근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박대동]

박대동 사외이사의 임기가 '20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년 2월 박대동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 및 회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원후보천위원회에서는 박대동 사외이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온 점과 향후에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내·외 이사간의 긍정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의 견실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이사회에 임기 3년 연임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사외이사 후보 본인인 박대동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세민]

박세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20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년 2월 박세민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 및 회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원후보천위원회에서는 박세민 사외이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온 점과 향후에도 손해보험회사가 직면할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에 기여할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이사회에 임기 3년 연임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삼성화재 이사회사무국 및 사외이사는 각각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로 사외이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의 항목은 주주의 이익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기본 역할과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등의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대동, 조동근, 박세민, 김성진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였으며, '20년 2월 실시된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사외이사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년 3월 임기만료인 조동근 사외이사, '20년 3월 임기만료 예정인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는 모두 사외이사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연임을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	평가 여부
조동근	'16.03.11 ~	3년 연임	95.4%	실시
박대동	'17.03.24 ~	3년 연임	92.6%	실시
박세민	'17.03.24 ~	3년 연임	100%	실시

※ 출석률은 '19.01.01 ~ '19.12.31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6년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조동근 사외이사는 '16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100% 참석을 하였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17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대동 사외이사와 박세민 사외이사는 '17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조동근 사외이사, 박대동 사외이사, 박세민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음은 물론,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적극적 요건(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실시된 사외이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20년 2월 실시된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사외이사 후보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별첨 :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삼성화재는 주요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은 후,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그 중 당사 사외이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최종 선정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시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삼성화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주요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9년 1월에 14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정하였고, '19년 9월에 11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였으며, '20년 1월에는 11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직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여 별도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금융 전문가 6명, 경제 전문가 3명, 회계 전문가 1명, 법률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1차 결의(심의)일자 : 2019년 1월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10명	71.5%	-
경영	0명	0%	-
경제	1명	7.1%	-
회계	2명	14.3%	-
법률	1명	7.1%	-
기타	0명	0%	-
합계	14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0명	0%	-
지원부서	14명	100%	-
합계	14명	100%	-

- 2차 결의(심의)일자 : 2019년 9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명	54.5%	-
경영	0명	0%	-
경제	3명	27.3%	-
회계	1명	9.1%	-
법률	1명	9.1%	-
기타	0명	0%	-
합계	11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2명	18.2%	-
지원부서	9명	81.8%	-
합계	11명	100%	-

- 3차 결의(심의)일자 : 2020년 1월 3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명	54.5%	-
경영	0명	0%	-
경제	3명	27.3%	-
회계	1명	9.1%	-
법률	1명	9.1%	-
기타	0명	0%	-
합계	11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2명	18.2%	-
지원부서	9명	81.8%	-
합계	11명	100%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요주주, 임원,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아 심사하여 최종 후보군을 정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리 중인 사외이사 후보군을 '19년 1월과 '19년 9월, '20년 1월에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1차 보고일자 : 2019년 1월 31일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10명	71.5%	-
경영	0명	0%	-
경제	1명	7.1%	-
회계	2명	14.3%	-
법률	1명	7.1%	-
기타	0명	0%	-
합계	14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0명	0%	-
지원부서	14명	100%	-
합계	14명	100%	-

- 2차 보고일자 : 2019년 9월 26일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명	54.5%	-
경영	0명	0%	-
경제	3명	27.3%	-
회계	1명	9.1%	-
법률	1명	9.1%	-
기타	0명	0%	-
합계	11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2명	18.2%	-
지원부서	9명	81.8%	-
합계	11명	100%	-

- 3차 보고일자 : 2020년 1월 30일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명	54.5%	-
경영	0명	0%	-
경제	3명	27.3%	-
회계	1명	9.1%	-
법률	1명	9.1%	-
기타	0명	0%	-
합계	11명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0명	0%	-
외부자문기관	0명	0%	-
사외이사	2명	18.2%	-
지원부서	9명	81.8%	-
합계	11명	100%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지원부서 : 이사회사무국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담당간부 2명, 담당선임 1명
- 지원내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1) 2019년 제1차 이사회 : '19.01.31(木) /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19.01.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감사업무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19년 제2차 이사회 : '19.02.27(水) /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02.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이사회 및 이사회內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부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2019년 제3차 이사회 : '19.03.22(金) / 오전 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19.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18년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임차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Axiu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브라질법인 청산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18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ORSA)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이사 보수 책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이사회內 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4) 2019년 제4차 이사회 : '19.04.30(火)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19.04.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英 로이즈 손보사 지분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2019년 제5차 이사회 : '19.06.20(木) /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19.06.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5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6) 2019년 제6차 이사회 : '19.09.26(木) / 오전 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19.09.1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8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임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Manager 201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2019년 제7차 이사회 : '19.11.29(金) / 오전 9시

[안건 통지일 : '19.11.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기부금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2019년 제8차 이사회 : '19.12.26(木) /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19.12.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조동근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11월 경영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주요주주 등과의 부동산 임대차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삼성자산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년 경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검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2019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1.31(木) / 오전 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19.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가결

(2)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2.27(水)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19.02.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가결

※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함

(3)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09.26(木) / 오전 11시 5분
[안건 통지일 : '19.09.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가결

(4) 2019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2.26(木) / 오후 4시 40분
[안건 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가결

(5) 2020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01.30(木) / 오전 9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가결

(6) 2020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02.27(木)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조동근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가결

※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함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1) 2019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3.22(金) / 오전 9시 45분
[안건 통지일 : '19.03.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세민	김성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19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찬성	찬성	가결
내부 리스크모델 개선 로드맵 수립(안)	찬성	찬성	가결

(2) 2019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6.20(木)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19.06.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3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3) 2019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9.26(木) / 오전 8시 25분

[안건 통지일 : '19.09.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6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6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19년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점검 및 '20년 거래전략	찬성	찬성	가결
대손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	찬성	찬성	가결

(4) 2019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10.31(木) / 오전 9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10.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9년 ALM 운용 점검 및 '20년 전략	찬성	찬성	가결
'20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찬성	찬성	가결
'20년 일반보험 보유 및 재보험 전략	찬성	찬성	가결

(5) 2019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11.27(水) / 오전 9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20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찬성	찬성	가결
'20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가결

라) 내부거래위원회

(1) 2019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3.22(金) / 오전 10시 50분
[안건통지일 : '19.03.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Axiu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2) 2019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6.20(木) / 오후 3시 25분
[안건통지일 : '19.06.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3) 2019년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9.26(木) / 오전 9시 10분

[안건통지일 : '19.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8E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 제50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Manager 201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4) 2019년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 '19.12.26(木) / 오후 4시 15분

[안건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마) 보수위원회

(1) 2019년 제1차 보수위원회 : '19.01.31(木) / 오전 10시 15분
[안건통지일 : '19.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18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가결

(2) 2019년 제2차 보수위원회 : '19.02.27(金) / 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 '19.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	찬성	가결
2018년 연차보수 평가의 건	-	찬성	가결

(3) 2019년 제3차 보수위원회 : '19.04.30(火) / 오후 4시
[안건통지일 : '19.04.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19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가결

(4) 2019년 제4차 보수위원회 : '19.12.26(木) / 오후 3시 50분

[안건통지일 : '19.12.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4기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4차분 지급 결의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바) 감사위원회

(1) 2019년 제1차 감사위원회 : '19.01.31(木) / 오전 9시 40분
[안건통지일 : '19.0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감사업무 결과 및 '19년 감사업무 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2)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 : '19.02.27(水) / 오후 1시 40분
[안건통지일 : '19.0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제69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견진술 결의	찬성	-	찬성	가결

(3) 2019년 제3차 감사위원회 : '19.03.22(金) / 오전 10시 15분

[안건통지일 : '19.03.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12월~'19년 2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2019년 제4차 감사위원회 : '19.06.20(木) / 오후 4시 20분

[안건통지일 : '19.06.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5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3~5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5) 2019년 제5차 감사위원회 : '19.09.26(木) / 오전 9시 55분
[안건통지일 : '19.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8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제70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6~8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6) 2019년 제6차 감사위원회 : '19.12.26(木) / 오후 3시 10분
[안건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11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9~11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박대동 사외이사

박대동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내부거래위원회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2회 중 1회, 감사위원회는 6회 중 5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박대동 사외이사가 '19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약 17시간입니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개별 사외이사가 할애한 시간 미포함)

나) 조동근 사외이사

조동근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7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내부거래위원회 4회, 감사위원회 6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조동근 사외이사가 '19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약 15시간입니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개별 사외이사가 할애한 시간 미포함)

다) 박세민 사외이사

박세민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내부거래위원회 1회, 보수위원회 2회 및 감사위원회 6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박세민 사외이사가 '19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약 14시간입니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개별 사외이사가 할애한 시간 미포함)

라) 김성진 사외이사

김성진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7회에 참석하였고,
보수위원회 4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4회, 내부거래위원회는 4회 중 3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진 사외이사가 '19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약 13시간입니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개별 사외이사가 할애한 시간 미포함)

마) 요약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박대동	8	8	24	4	4	5	4	4	7
조동근	8	7	16	4	4	5	-	-	-
박세민	8	8	24	-	-	-	1	1	2
김성진	8	7	22	-	-	-	5	4	9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내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박대동	3	3	-	2	1	1	6	5	1
조동근	4	4	-	-	-	-	6	6	5
박세민	1	1	-	2	2	2	6	6	5
김성진	4	3	-	4	4	5	-	-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피보험자 : 全임원(사외이사 포함)
- 보상한도 : 1 청구당 1,000억 / 총보상한도 1,000억
- 보험료 : 905,000천원
- 보험기간 : '19.10.30 ~ '20.10.30(1년)
- 가입사 : KB손해보험(간사사), 현대해상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공
- 신임 사외이사 대상 회사 설명회 실시
- 안건 사전설명 및 외부교육 참석 지원
- 분기별 회사 실적자료 제공
- 대표이사 정례조회사 및 조회방송 제공
- SERICEO 서비스 제공 등

교육일자	대상자	내용
'19.01.02	사외이사 전원	'19년 신년사 제공
'19.01.05	조동근	SERICEO 컨텐츠(경제, 트렌드, 인문 등) 학습
'19.01.09	박대동	SERICEO 컨텐츠(경제, 트렌드, 인문 등) 학습
'19.01.09	김성진	SERICEO 컨텐츠(경제, 트렌드, 인문 등) 학습
'19.01.26	박세민	SERICEO 컨텐츠(경제, 트렌드, 인문 등) 학습
'19.01.31	사외이사 전원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배포자료 제공
'19.02.01	사외이사 전원	'19년 2월 조회방송 제공
'19.03.05	사외이사 전원	'19년 3월 조회방송 및 '18년 4분기 경영실적 제공
'19.03.19	김성진	3/22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03.19	박세민	3/22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04.01	사외이사 전원	'19년 2분기 조회사 제공

교육일자	대상자	내용
'19.05.02	사외이사 전원	'19년 5월 조회방송 제공
'19.05.14	사외이사 전원	'19년 1분기 경영실적 제공
'19.05.14	조동근, 박세민	신외감법 도입 관련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 교육(삼정KPMG 주관 외부교육)
'19.06.03	사외이사 전원	'19년 6월 조회방송 제공
'19.06.18	박대동	6/20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과 IFRS17, K-ICS 등 제도 관련 동향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06.27	박대동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교육(감사위원회포럼 주관 외부교육)
'19.07.01	사외이사 전원	'19년 7월 조회방송 제공
'19.08.01	사외이사 전원	'19년 8월 조회방송 제공
'19.08.09	사외이사 전원	'19년 2분기 경영실적 제공
'19.09.03	사외이사 전원	'19년 9월 조회방송 제공
'19.09.19	박대동	9/26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09.24	김성진	9/26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10.01	사외이사 전원	'19년 4분기 조회사 제공
'19.10.28	김성진	10/31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10.29	박대동	10/31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11.01	사외이사 전원	'19년 11월 조회방송 제공
'19.11.14	사외이사 전원	'19년 3분기 경영실적 제공
'19.11.26	박대동	11/27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11.26	김성진	11/27日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사전설명, RM 관련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내부교육)
'19.12.03	사외이사 전원	'19년 12월 조회방송 제공

※ SERICEO는 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교육일자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초 학습일자를 기재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소극적 자격요건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박대동, 조동근, 박세민, 김성진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원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동안 소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박대동, 조동근, 박세민, 김성진 사외이사는 '19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美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며, 제19대 국회의원 재임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보험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셀맥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고 있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견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바탕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90% 이상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고,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美 신시내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경제신문 칼럼 기고, 학술대회 및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존경 받는 인사로 이사회 등의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왔으며,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90% 이상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고,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英 브리스톨대학교에서 보험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보험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보험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법 전문가로서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삼성화재의 지속가능한 성장, 준법경영 및 소비자보호 실천에 기여해왔으며, 전문적인 식견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삼성화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100%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으며,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업무와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등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美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의 주요 보직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경제·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등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양증권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직위와 업무를 고려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당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이익 추구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에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90% 이상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고, 회사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요약

가) 박대동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역임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나) 조동근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다) 박세민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분과위원 참여 등 보험법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라) 김성진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정경제부 주요 보직 역임,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삼성화재는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중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연임시 임기는 3년내로 하며,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전문성, 이해도 및 독립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1)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사무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평가기준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로, 사외이사 본인과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정한 설문서로 사외이사를 평가합니다.

설문서의 평가항목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주주와 경영진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여부 등의 기본역할과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여부 등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1점에서 5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3) 평가절차

매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사무국에서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하며, 이사회사무국 역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토대로 동일한 설문지 항목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며,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로 평가합니다.

(4)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의 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년 2월 이사회와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사무국에 의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건에 대한 검토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의결기구 운영시 안건에 대한 검토 시간의 충분한 확보 및 필요시 사외이사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 등을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출석률
박대동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92.6%
조동근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95.4%
박세민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100%
김성진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85.7%

※ 출석률은 '19.01.01 ~ '19.12.31 기준임(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3)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박대동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17.03.24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8,000천원	月 6,500천원 * 12개월
	기본금	月 6,500천원	-
	상여금	-	-
	기타수당	-	-
		-	-
나. 보수외 기타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수검	종합검진 1회(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19.01.01 ~ '19.12.31 지급내역임

2) 조동근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16.03.1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8,000천원	月 6,500천원 * 12개월
	기본금	月 6,500천원	-
	상여금	-	-
	기타수당	-	-
		-	-
나. 보수외 기타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배우자만 수검	종합검진 1회(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19.01.01 ~ '19.12.31 지급내역임

3) 박세민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17.03.24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8,000천원	月 6,500천원 * 12개월
	기본금	月 6,500천원	-
	상여금	-	-
	기타수당	-	-
		-	-
나. 보수외 기타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본인만 수검	종합검진 1회(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19.01.01 ~ '19.12.31 지급내역임

4) 김성진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18.03.23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8,000천원	月 6,500천원 * 12개월
	기본금	月 6,500천원	-
	상여금	-	-
	기타수당	-	-
		-	-
나. 보수외 기타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수검	종합검진 1회(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19.01.01 ~ '19.12.31 지급내역임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신동엽	'11.06.03	'16.03.13	57개월	보상委 리스크관리委		(現)연세대 교수
문효남	'12.06.05	'18.03.23	69개월	임원후보추천委 내부거래委	이사회 의장 ('12.6월 ~ '18.3월) 보상위원장 ('14.1월 ~ '15.3월) 내부거래위원장 ('12.9월 ~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6.10월 ~ '18.3월)	(現) 법률사무소 상용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장
손병조	'12.06.05	'17.03.24	57개월	감사委 보수委 리스크관리委	감사위원장 ('12.6월 ~ '17.3월) 보수위원장 ('15.3월 ~ '17.3월) 리스크관리위원장 ('16.3월 ~ '17.3월)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관세청 차장
윤영철	'12.06.05	'17.03.24	57개월	감사委 내부거래委		(現)연세대 교수
조동근	'16.03.11	'22.03.21	45개월	감사委 내부거래委 임추委	감사위원장 ('17.3월 ~ 현재) 내부거래위원장 ('18.3월 ~ 현재)	(現)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대동	'17.03.24	'20.03.23	33개월	임원후보추천委 리스크관리委 감사委 내부거래委	이사회 의장 ('18.3월 ~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8.3월 ~ 현재)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現)셀맥인터내셔날 사외이사
박세민	'17.03.24	'20.03.23	33개월	감사委 보수委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김성진	'18.03.23	'21.03.22	21개월	보수委 리스크관리委 내부거래委	보수위원장 ('19.3월 ~ 현재) 리스크관리위원장 ('19.3월 ~ 현재)	(現)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現)한양증권 사외이사

※ 재임기간은 작성기준연도말('19년말) 기준

※ 담당위원회 및 직위는 퇴임 사외이사의 경우 퇴임시점 기준, 현 사외이사는 제출일 기준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삼성화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5년 2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 입니다.

이후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거하여 '16년 10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의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였고, '18년 1월 이사회의 의결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지배구조내부규범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삼성화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최종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으며,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부서는 '19년 1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16명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어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16명의 현황을 '19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가 사임 기타 사유로 임기 중도에 퇴임하거나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상기 사유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받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2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30일 내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여야 하며, 최종 후보를 확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가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서로 직무를 임시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2조에서 정한 승계절차를 진행하되,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삼성화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을 위하여 주주,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매년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 해당사항 없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평가
  '19년 중 삼성화재의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는 없습니다.

2) 금융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

- 삼성화재는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 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19년 중 삼성화재의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는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삼성화재는 관련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승계 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침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삼성화재는 '19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16명의 인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후보군 현황

이사회에 최종 보고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일자 : '19.12.26 / 2019년 제8차 이사회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3	18.8%	-
외부	금융회사	13	81.2%	-
	비금융회사	0	0%	-
	공공기관	0	0%	-
	기타	0	0%	-
합계		16	100%	-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최고경영자	0	0%	-
이사회	0	0%	-
주주	0	0%	-
외부기관	0	0%	-
기타	16	100%	-
합계	16	100%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점검내역

삼성화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점검도 해당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9년 12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중도사임에 따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사유 발생시 경영승계 절차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관리 중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16명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개시사유 발생에 따른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단 시일내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삼성화재는 인사팀 인사파트를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력운영, 인사제도, 채용, 보상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파트
- 직원수 : 총 22명
- 담당자 : 부서장(총괄) 1명, 담당간부 2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삼성화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적정성 감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재무전문가, 보험전문가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1)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삼성화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19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및 사후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 제4항),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19년 1월에 소집된 '19년도 1차 감사위원회는 제69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재무담당 임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8년 12월에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전문성 및 대외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 회계법인 4곳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기준으로는 감사팀원의 업무기간, 경험 등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해당 회계법인의 역량 및 전기 감사투입인력·시간 등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19년 중 당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역 내용	보수 (부가세 포함)
감사	분·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1,155백만원
계		1,155백만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간 업무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일상감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위임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충분한 감사인력 및 시간이 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합니다.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현 3명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시 당사 내부규정인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이사의 자격요건) 제2항 및 제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감사위원 3명은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동근	사외	위원장	'19.03.22	'22.03.21
박대동	사외	위원	'17.03.24	'20.03.23
박세민	사외	위원	'17.03.24	'20.03.2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재적 감사위원의 94.4% 참여 하에 총 6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 심의 및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감사위원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감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 한 해 19건의 보고 및 의결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감사위원회 : '19.01.31(木) / 오전 9시 40분
[안건통지일 : '19.0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감사업무 결과 및 '19년 감사업무 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나)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 : '19.02.27(水) / 오후 1시 40분

[안건통지일 : '19.0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69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제69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견진술 결의	찬성	-	찬성	가결

다) 2019년 제3차 감사위원회 : '19.03.22(金) / 오전 10시 15분

[안건통지일 : '19.03.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 12월~'19년 2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 제4차 감사위원회 : '19.06.20(木) / 오후 4시 20분
[안건통지일 : '19.06.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5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3~5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마) 2019년 제5차 감사위원회 : '19.09.26(木) / 오전 9시 55분
[안건통지일 : '19.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8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제70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6~8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바) 2019년 제6차 감사위원회 : '19.12.26(木) / 오후 3시 10분
[안건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박대동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년 1~11월 기부금 집행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년 9~11월 일상감사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3) 평가

삼성화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 ·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이 있으며, '19년 12월 기준 감사팀장 외 21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19.01.31	감사위원회	'18년 감사결과 및 '19년 감사계획 등
'19.02.27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등
'19.03.2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등
'19.06.20	감사위원회	'19년 3~5월 일상감사 보고 등
'19.09.26	감사위원회	제70기 결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등
'19.12.26	감사위원회	'19년 9~11월 일상감사 보고 등
'19.01.18	감사팀장	시재점검
'19.02.22	감사팀장	'18 회계년도 재무제표 점검
'19.04.05	감사팀장	재보험 정청산 관리실태 점검
'19.05.17	감사팀장	GA영업 현장점검
'19.06.14	감사팀장	부동산 업무 운영실태 점검
'19.06.28	감사팀장	금융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19.09.20	감사팀장	보험조사업무 운영실태 점검
'19.10.31	감사팀장	장기보험 U/W 점검
'19.12.13	감사팀장	자금세탁 방지업무 정기점검
'19.12.20	감사팀장	'19년 IT 정기점검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삼성화재는 글로벌 기준 재무건전성 170% 이상 유지下 회사가치의 안정적 성장 및 고객의 이익 보호 달성을 위험관리 목표로 두고 주요 리스크 전략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 경영의사결정에 리스크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경영진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보험영업 및 자산운용 등에 따른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문화를 회사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 리스크관리전략 등에 대해 의결하며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3인의 위원 중 사외이사를 2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의 리스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 자산운용 등에 대한 회사의 리스크 전략 수립과 가이드라인 관리를 통해 보험상품운영, 자산투자전략 수립, 자본적정성 평가 등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이 리스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20년 경영활동을 위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으로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파생상품 거래전략 등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삼성화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유 및 재보험 전략"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인수 가능한 최대 위험량 및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재보험 전략에 대한 운영결과 점검과 재보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험전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위험전가평가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을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최악의 상황下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점검하고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안정적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평가 결과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19년 일반보험 보유 및 재보험 전략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삼성화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관리기준을 의결하고, 리스크 허용한도를 결정합니다.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과 별도로 SolvencyⅡ 방법론에 기초하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허용한도를 결정하고 회사가 보유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유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분기별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규정 산하에 리스크관리시행세칙, 보험/자산/ALM리스크 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변화와 제도변경 등에 맞춰 적절하게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그 외 삼성화재는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점검 결과 및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의 변동내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上 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17조(간사)에 의거,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하며, 매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과 관련하여 계리RM팀은 위원회前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위원회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대면 설명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인 2인이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아 운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다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박대동 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성진	사외	위원장	'19.03.22	'20.03.21
박대동	사외	위원	'19.03.22	'20.03.21
배태영	상임	위원	'19.03.22	'20.03.21
박세민	사외	前위원장	'18.03.23	'19.03.2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종류)에 의거하여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19년에는 총 5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86.7%입니다.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결사항은 9건, 보고사항은 6건이었습니다.
특히 의결사항은 리스크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3.22(金) / 오전 9시 45분
[안건 통지일 : '19.03.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세민	김성진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8년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8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19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 리스크모델 개선 로드맵 수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9년 1월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과 내부 리스크모델 개선 로드맵 수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8년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18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나) 2019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6.20(木)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19.06.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3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19년 6월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9.3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을 보고하였습니다.

다) 2019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09.26(木) / 오전 8시 25분
[안건 통지일 : '19.09.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해외 출장)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9.6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특이사항 없음			-
'19.6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19년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점검 및 '20년 거래전략	찬성	찬성	-	가결
대손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	찬성	찬성	-	가결

'19년 9월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년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점검 및 '20년 거래전략, 대손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9.6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19.6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라) 2019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10.31(木) / 오전 9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10.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9년 ALM 운용 점검 및 '20년 전략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년 일반보험 보유 및 재보험 전략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9년 10월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년 ALM 운용 점검 및 '20년 전략, '20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20년 일반보험 보유 및 재보험 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마) 2019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19.11.27(水) / 오전 9시 30분
[안건 통지일 : '19.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대동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20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9년 11월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20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3) 평가

삼성화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이며, 평가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삼성화재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과의 중요한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전에 사전 심의·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내부거래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내부거래 보고·청취, 심의 또는 의결, 조사 및 명령, 보고 및 시정 조치 등의 권한 및 역할을 가집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내부거래 보고 청취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보험업법상(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위원회 보고 대상 거래에서 제외합니다.

나) 내부거래 심의·의결

(1) 위원회는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상(제11조의2)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 50억원 이상 거래이거나, 보험업법상(제1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 대주주와의 10억원 이상 거래를 사전 심의 합니다.

(2) 1항의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합니다.
다만, 약관에 의한 거래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거래에서 제외합니다.

다) 내부거래 조사 명령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 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행위의 중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19년 중 재임하였던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동근	사외	위원장	'19.03.22	'20.03.21
김성진	사외	위원	'19.03.22	'20.03.21
박대동	사외	위원	'19.03.22	'20.03.21
박세민	사외	前위원	'18.03.23	'19.03.2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4회의 내부거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1.7%로 충실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상(제11조의2)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 50억원 이상 거래이거나, 보험업법상(제1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 대주주와의 1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의 이후 이사회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경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3.22(金) / 오전 10시 50분
[안건통지일 : '19.03.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세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Axiu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나) 2019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6.20(木) / 오후 3시 25분

[안건통지일 : '19.06.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불참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3) 2019년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 '19.09.26(木) / 오전 9시 10분

[안건통지일 : '19.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8E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 제50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Manager 201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4) 2019년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 '19.12.26(木) / 오후 4시 15분

[안건통지일 : '19.1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동근	김성진	박대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 심의의 건	-	-	-	심의

※ 의안 중 심의 대상 건은 찬반 여부를 '-'로 표기함

3) 평가

삼성화재는 내부거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내부거래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이며, 평가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9. 보수위원회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참조

10. 경영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삼성화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일반, 재산운용,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각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최근 선임일	임기 만료일
최영무	상임	위원장	'19.03.22	'20.03.21
배태영	상임	위원	'19.03.22	'20.03.21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4회의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 전원이 100% 참석하여 당좌차월 계약,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경영위원회 : '19.02.18(月) / 오후 4시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영무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당좌차월 계약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제2차 경영위원회 : '19.03.19(火) / 오후 2시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영무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외사무소 폐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 제3차 경영위원회 : '19.06.25(火) / 오후 4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영무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기부금 집행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 제4차 경영위원회 : '19.10.28(月) / 오후 3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영무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회사는 경영위원회가 법령과 내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수행하는 역할이 그 목적에 맞춰 적정하며 실제 운영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수행합니다.
연 1회 경영위원회 위원들과 간사부서의 정성 및 정량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 운영측면의 내용과 출석률, 전문성 등 활동측면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평가는 이사회사무국 주관으로 공정하게 평가되고, 평가 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자기평가, 회사평가 및 출석률을 포함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로 진행하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평가결과 매우 우수이며, '20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지배구조 관련 대외평가 결과

· '19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당사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다고 평가하였습니다.(A등급 획득)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를 인정받아 ESG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별 명칭 및 의미>

등급	의미
S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A+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B+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B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C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D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검토 대상

- 現) 조동근 사외이사 ('16년 3월 11일 ~ 현재)

□ 검토 내용

- 소극적 요건(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 해당사항 없음
- 적극적 요건(금융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및 제7조) : 충족
-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 우수
  ·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 적합

□ 검토 결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충족사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조동근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2019.02.2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박 대 동 (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검토 대상

- 現) 박대동 사외이사 ('17년 3월 24일 ~ 현재)

□ 검토 내용

- 소극적 요건(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 해당사항 없음
- 적극적 요건(금융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및 제7조) : 충족
-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 우수
  - ·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 97.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 적합

□ 검토 결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충족사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박대동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2020.02.2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박 대 동 (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검토 대상

- 現) 박세민 사외이사 ('17년 3월 24일 ~ 현재)

□ 검토 내용

- 소극적 요건(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 해당사항 없음
- 적극적 요건(금융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및 제7조) : 충족
-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 우수
  - ·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 적합

□ 검토 결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충족사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박세민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2020.02.2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박 대 동 (인)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삼성화재 이사회규정 제14조의2를 그 근거로 하여 2010년 6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속하여 재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인 위원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제6조에 의거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김성진, 박세민, 배태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인(김성진, 박세민)이 사외이사이고, 김성진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태영 위원은 삼성화재 재무분야의 전문가이며, 김성진 위원장은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박세민 위원은 금융위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및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로 보수 지급의 원천이 되는 회사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세민 위원이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2019년 3월 22일 이사회 이전에는 박대동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2019년 3월 22일 이사회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박대동	사외 이사	해당(X)	없음	예금보험공사 사장 現)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2019년 3월 22일 이사회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박세민	사외 이사	해당(X)	없음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법)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성진	사외	위원장	'19.03.22	'20.03.21
박세민	사외	위원	'19.03.22	'20.03.21
배태영	상임	위원	'19.03.22	'20.03.21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 2월 27일, 4월 30일, 12월 26일 각각 개최된 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임원의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인센티브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연 지급함을 재확인하였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당사의 업무 특성(간접운용, 주요 의사결정 권한 無)을 고려할 때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어려워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9년 2월 27일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총보수 중 기본급과 성과보수의 비중과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의 적정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총보수 중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있으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이 3년 이상이 적정하다는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아래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가) 국내 : 회사내 모든 사업부에 적용

나) 해외 : 해외법인 및 지점, 사무소에 적용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8일 개최된 2017년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2014~2016년 변동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019년 2월 27일, 12월 26일 각각 개최된 2019년 제2차,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를 재점검 하였습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임원의 범주로 결정하였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기타 직원의 경우 당사의 업무 특성상 변동보수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른 변동보수 지급 대상자는 53명입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53명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김성진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9년에는 총 4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들의 참석률은 90%(성과평가시 피평가자 본인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 제외)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19년 1월에 소집된 2019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8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의 건을 심의하였고, 2019년 2월에 소집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과 2018년 연차보수평가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소집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9년 사내이사 성과 평가안 승인의 건이 승인되었고, 12월에 소집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는 제4기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4차분 지급 결의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 제1차 보수위원회 : '19.01.31(木) / 오전 10시 15분
[안건통지일 : '19.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피평가자 본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18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나) 2019년 제2차 보수위원회 : '19.02.27(水) / 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 '19.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대동	김성진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연차보수 평가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 제3차 보수위원회 : '19.04.30(火) / 오후 4시
[안건통지일 : '19.04.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세민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피평가자 본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19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라) 2019년 제4차 보수위원회 : '19.12.26(木) / 오후 3시 50분
[안건통지일 : '19.12.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진	박세민	배태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4기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4차분 지급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삼성화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 1회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위원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 회사평가, 정량평가

(출석률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년 2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이며, 평가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주당이익, 세전이익률, 주가수익률), 생산성 지표(사망담보 판매액)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건전성 지표(준법경영 등)와 고객만족도 지표(금감원 민원평가등급 등), 리스크지표(위험손해율, 안전환경사건사고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주당순이익, 세전이익, 주가수익률 등)와 비재무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주당순이익, 세전이익, 주가수익률 등의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활용을 통해 이를 개인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전에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주가에 연동하여 재산정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투자성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연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원의 경우 개인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성과보수의 경우 회사경영목표 달성률, 조직 성과 및 초과 이익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의 경우, 잠정적으로 결정된 성과보수액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성과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금원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경영진의 장기성과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3년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3년 평균 계약연봉의 최소 0%, 최대 300% 수준을 3년 이상(년 환산 최소 0%, 최대 100%)에 걸쳐 4차례 이연 지급(1차 40% 현금, 2~4차 각 20% 주식연계상품) 하여, 이에 따른 고정보수(개인연봉)대비 변동보수의 비율은 년 기준 최소 0%에서 최대 100% 수준 입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식연계상품 보수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액에 따라 1차년도는 현금, 2·3·4차년도는 주식연계상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60%를 이연지급하며 2차년도, 3차년도 및 4차년도에 각 20%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8일 개최된 2017년 제3차 보수위원회의 결의을 통해 해당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당사 업무특성상 이연지급하지 않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이윤배분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직원 외에 일반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수당을 월급여 항목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현재 보수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자문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2019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9년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8년)	6,349	14,117	0.45	6,121	1.04
당해년도 (2019년)	'작성 중' (2020년 3월 13일 공시예정)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당해년도가 2019년인 경우 2018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전무이상	상무	간부	사원	기타
전년도 (2018년)	보수총액	87	139	3,867	1,952	304
	성과보수액	11	9	-	-	-
당해년도 (2019년)	보수총액	'작성 중' (2020년 3월 13일 공시예정)				
	성과보수액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3)]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8년)	경영진	51	122	3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53	128	2	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경영진·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주3) 집단성과급(PS 등)은 제외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18년)	경영진	3	1	-	2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2	1	-	1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8년)	경영진	248	148	1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250	199	5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주3) 해당년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해당년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8년)	경영진	100	-	-	100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51	-	-	51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8년)	경영진	100	2	98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51	1	1	49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주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9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9년(t기) 발생분, 2018년(t-1기) 발생분, 2017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주2) 해당년도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 기준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8년)	경영진	-	-	-3	1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	-	-2	5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지급액
전년도 (2018년)	경영진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경영진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 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956. 05. 15 개정
1957. 08. 08 개정
1957. 10. 30 개정
1959. 08. 22 개정
1960. 06. 01 개정
1962. 03. 03 개정
1962. 11. 09 개정
1963. 01. 23 개정
1963. 02. 25 개정
1966. 05. 14 개정
1968. 05. 10 개정
1969. 03. 31 개정
1971. 05. 14 개정
1975. 05. 03 개정
1975. 06. 15 개정
1976. 02. 26 개정
1977. 02. 25 개정
1978. 02. 24 개정
1979. 02. 27 개정
1980. 02. 26 개정
1982. 02. 25 개정
1983. 05. 28 개정
1983. 09. 27 개정
1985. 05. 28 개정
1986. 05. 28 개정
1987. 05. 28 개정
1988. 05. 27 개정
1989. 05. 26 개정
1990. 05. 29 개정
1991. 05. 28 개정
1992. 05. 28 개정
1993. 12. 06 개정
1995. 05. 26 개정
1996. 05. 30 개정
1997. 05. 29 개정
1998. 05. 28 개정
1999. 05. 27 개정
2000. 05. 30 개정
2001. 05. 30 개정
2002. 05. 30 개정
2003. 06. 11 개정
2004. 05. 28 개정
2006. 05. 30 개정
2009. 06. 04 개정
2010. 06. 01 개정
2012. 06. 05 개정
2013. 06. 07 개정
2016. 03. 11 개정
2017. 03. 24 개정
2018. 03. 23 개정
2019. 03.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당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로 기술한다.

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①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개정 2006.5.30>
②삭제<2006.5.30>

③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④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개정 2006.5.30>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 예정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6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당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③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⑦당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당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3.22>

제7조(명의개서대리인) ①당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사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당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19.3.22>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삭제<2019.3.22>

제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 기간 2주간 전에 공고를 한다.
②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제11조의 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개정 2009.6.4>
3.제11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9.6.4>
5.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자본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4>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8조 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일반공모증자) ①당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6.4>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당회사는 임·직원(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당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5.30, 2009.6.4>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 또는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06.5.30, 2009.6.4>
5.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당회사가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경영성과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시가발행) 당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소집시기) ①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정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당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고사항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당회사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서 수개의 주주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서 보존하고 각 지점에서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제23조(이사의 수)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제2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3.11, 2018.3.23>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3년내로 하며,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6.1, 개정 2017.3.24>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신설 2010.6.1>

제26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표이사등의 선임) ①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개정 2018.3.23>
②당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5>

제28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담당한다.

③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6.3.1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5.30, 2016.3.11>

③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적어도 1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5.30>

④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0>

제29조의2(위원회) ①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17.3.24>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3(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경영의사결정 등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6.5>
②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6.5>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당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6.4>
④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3.24>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개정 2017.3.24>
⑥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3.22>

제3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6.5>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2.6.5>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개정 2018.3.23, 2019.3.22>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12.6.5>

제34조의2(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35조(사업연도) 당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6.5>

제36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당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개정 2012.6.5>
②당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신설 2012.6.5>
③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제36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당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2018.3.23, 2019.3.22>

제37조(이익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적립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당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12.6.5>
④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①(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세칙제정)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는 제2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1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개정 및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경과조치) 제24조 제3항 및 제26조 제2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 당시 증권거래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7항 제4호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 또는 연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3년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이익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8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理 事 會 規 程

2017. 3. 24

三星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수립, 평가 및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⑥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5조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서로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6조 (감사위원회의 보고등)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소집절차) ①이사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질서유지)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1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으로 한다.
①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주주총회 소집
2.주주총회의장의 결정
3.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경영에 관한 사항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
2.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4.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8.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10억원 이상의 증여<신설 2017.3.24>

③재무에 관한 사항
1.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4.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④이사에 관한 사항
1.대표이사의 신규선임, 연임 및 해임
2.이사회 의장의 결정
3.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 및 해촉
4.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기 타
1.이사회 규칙의 개폐
2.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각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5.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제 5 장 소위원회

제14조 (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각종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소위원회 설치등) ①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경영위원회
2.리스크관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3.보상위원회(보수위원회)
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 (경영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대로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경영위원회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경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 (감사위원회) ①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감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의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16조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및 사무국) ①이사회에는 간사 및 이사회 사무국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며,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③이사회 사무국은 의장 및 간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사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지원하고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3

지배구조내부규범

三星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이사"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3."사외이사"란 지배구조법 제2조제4호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4."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
6."대주주"란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개폐)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이사의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2.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4.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8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수립, 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다.
⑦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각종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⑧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주주총회 소집
  나.주주총회 의장의 결정
  다.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라.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경영에 관한 사항
  가.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
  나.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라.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마.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아.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3.재무에 관한 사항
가.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다.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라.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이사에 관한 사항
가.대표이사의 신규선임, 연임 및 해임
나.이사회 의장의 결정
다.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 및 해촉
라.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기 타
가.이사회 규칙의 개폐
나.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각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다.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라.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마.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⑨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관련법령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3.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속한 기관에 대한 기부금 지급
⑩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④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⑦사외이사는 제6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⑧회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0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사내이사(감사위원 제외)는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이사는 본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2조(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임기 만료

2.사임

3.지배구조법, 관련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회사와의 위임계약 종료사유의 발생

4.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②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각 이사는 업무상 필요시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권의 행사)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는 연 1회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②이사회 운영실적 평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2.감사위원회
3.경영위원회
4.리스크관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5.보상위원회(보수위원회)
6.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 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절차는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④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⑤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자회사에 대한 조사
7.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9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절차는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리스크 허용한도 및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결정
4.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5.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리스크관리 관련 신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7.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 및 자금조달 계획
8.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에 관한 사항
9.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20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절차는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④위원회는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제21조(내부거래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절차는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중요한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역할을 가진다.
1.내부거래 보고 청취
2.내부거래 심의·의결
3.내부거래 조사 명령
4.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제22조(경영위원회)
①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절차는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경영의 기본방침, 정책 및 전략
  나.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해외 지점 및 사무소 포함)
  다.거래은행과의 1,000억원을 초과하는 당좌개설
  라.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마.10억원 이상의 증여
  바.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
  사.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아.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자.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2.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가.1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투자(투자조합,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제외)
나.500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다.기타 주요 투자 결정
3.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한 사항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는 연 1회 위원회의 구조,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②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사무국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임원의 자격요건)
①대표이사 등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고 그 외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동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5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 외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②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6조(임원의 선임 및 퇴임)

①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임원의 퇴임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④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제4항, 제5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제5항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이사가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처리하며 제4호, 제5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임기 만료

2.사임

3.지배구조법,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회사와의 위임계약 종료사유의 발생

4.인사 기타 내부규정에 따른 면직

5.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⑧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을 제외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임기 및 유고시 직무대행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27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관련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직원 중에서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임원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임원 선임시에 참고한다.

②임원후보군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연수, 사이버강좌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29조(임원의 성과평가)

①사내이사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하며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한 성과는 대표이사가 평가한다.

②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시 정성적 평가를 활용한다.

③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는 경영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이사회사무국 평가로 나누어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한다.
⑤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경영성과와는 독립적인 지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 임면, 연임 등에 활용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집단성과급, 성과보수 등으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을 따른다.
다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기본급 외에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사인 임원의 경우 개인별 보수 책정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의 개인별 보수 책정시에는 담당업무, 처우직급, 경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차등할 수 있다.
④보수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1조(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및 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③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사임 기타 사유로 임기 중도에 퇴임하거나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32조(경영승계 절차)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1조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30일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한다.

제33조(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제32조의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및 경영승계 지원

제3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최고경영자는 제6조에 명시된 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 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및 후보자 추천 절차)
①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 발굴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자문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후보군 중에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6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르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고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③최고경영자는 법적 요건 외 리더십,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37조(공시)

①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회사 및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최고경영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1.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부 칙

1. 이 규범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